

발간등록번호

11-1790365-100008-0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 12.



관계부처 합동

발간등록번호

11-1790365-100008-0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 12.



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안내 사항

발간 목적

본 안내서는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긴급구조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요령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개정 이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습니다.

| 일자 | 주요 내용 |
|-------------|----------------------------------|
| '21. 10. 발간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수칙 안내서 발간 |
| '24. 12.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4.3.15.시행) 사항 반영 |

재검토 기한

안내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일(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를 말함)마다 보완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표시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2024.12.

관계법령 및 문의처

| 관계법령 | 관계부처 | 부서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02-2100-3057, 3047 |
| | | 법령해석 지원센터 | 02-2100-3043 |
|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 재난안전법 | 행정안전부 | 재난대응정책과 | 044-205-5215 |
| 실종아동법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447 |
| 자살예방법 | |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1 |
| 긴급복지지원법 | |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7 |
| 감염병예방법 |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043-201-2520 |
| 실종아동법 | 경찰청 | 아동청소년과 수사심사정책과 | 02-3150-1394 02-3150-0994 |
| 재난안전법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긴급구조) | 032-835-2346 |
| 위치정보법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이용정책과 | 02-2110-1528 |
| 통신비밀보호법 | 법무부 | 공공형사과 | 02-2110-3280 |
|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 044-202-6664 |
| 신용정보법 | 금융위원회 |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전자금융과 | 02-2100-2973 |
| 119법 | 소방청 | 119구조과(긴급구조) | 044-205-7612 |

※ 법령 최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을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C O N T E N T S

I

개요 5

- 1. 추진배경 6
- 2. 범위 및 적용대상 7
- 3. 관련 법령 현황 8

II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9

-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0
- 2. 개인정보보호 원칙 10
- 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 등을 위한 예외적 처리 11

III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13

- 1. 재난 대응 14
- 2. 감염병 등 대응 18
- 3.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 27
- 4.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 대응 37

부록

- 1.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41
- 2. 긴급구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44
-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45





I

개요

I 개요

1 추진배경

-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협초래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례 다수 발생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미흡 사례

- # 경찰이 30대 남성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아동을 납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렌트카 업체에게 해당 남성의 핸드폰 번호 등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핸드폰 번호 제공이 지연되어 범죄 대응 미흡('21.2.)
- # 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지자체가 소방관서에 교통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질의 다수
-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진자의 동선 정보 등이 웹사이트에 무분별하게 퍼져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 발생

➔ 긴급상황 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

2 범위 및 적용대상

- (범위) ①재난, ②감염병, ③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④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처리 절차·방법, 처리 가능 사례 등

긴급 상황 시 적용 법령

1 재난 대응

- 1-1 태풍·홍수·풍랑 및 화재·붕괴 등 재난 (「재난안전법」)

2 감염병 등 대응

- 2-1 감염병 발생 (「감염병예방법」)
- 2-2 가족전염병 발생 (「가족전염병예방법」)

3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

- 3-1 아동·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실종아동법」)
- 3-2 자살 위험자 발견 (「자살예방법」)
- 3-3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등 (「위치정보법」 등)

4 급박한 재산손실 등 위기상황 대응

- 4-1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
- 4-2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지원법」)

※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적용대상) 생명·신체·재산 상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공공기관 및 신상정보·연락처·영상 정보·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3 관련 법령 현황

| | 법률(안내서 상 약칭) | 소관부처 |
|----|--|----------------|
| 1 |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 행정안전부 |
|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 4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
| 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 보건복지부, 경찰청 |
| 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 보건복지부 |
| 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 방송통신위원회 |
| 8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 소방청 |
| 9 |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0 | 통신비밀보호법 |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 금융위원회 |
| 1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금융위원회 |
| 13 | 긴급복지지원법 | 보건복지부 |

※ 부록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참고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II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보장되며(헌재 2005. 5. 26. 99헌마 513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의해 구체화 됨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大韓民國 憲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 원칙(보호법 제3조 등)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시,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등)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보호법 제16조)
 -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보호법 제21조)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보호법 제23조, 제24조)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처리 가능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등을 위한 예외적 처리

-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도,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허용(보호법 제18조제2항)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재난안전법, 119법 등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성인이 실종되어 구조가 필요한 경우, 소재 파악에 필요한 CCTV 영상은 구조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방청 등에게 제공 가능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재난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정보를 방송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해당 방송에 필요한 긴급상황 촬영 영상을 방송국에 제공 가능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大韓民國 憲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III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1 재난 대응 * 재난안전법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¹⁾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가. 수집·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²⁾)·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대책본부장³⁾)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자⁴⁾,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난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이하 “재난피해자등”)의 정보⁵⁾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1항)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과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을 말함
- 2) **중앙대책본부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고,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됨
- 3) **지역대책본부장**: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대책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대책본부를 두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지역대책본부장**)이 됨
- 4)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도 포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 5)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2.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라.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대책본부장)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재난피해자들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2항)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자

나. 제공

■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재난대응 관련 업무수행 기관에게 재난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3항)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다. 보호조치 의무

①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역대책본부장)은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4항)

- 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 수집된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② 누구든지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재난안전법 제74조의3제5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재난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재난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재난 예방·대비·대응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참고 |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FAQ

Q1 | 지자체에서 대규모 홍수로 인한 구조대상 피해자 규모확인이 시급하다며, 침수지역 인근에 촬영된 CCTV 영상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공해도 될까요?

답변: 가능함. 홍수 등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는 수색·구조를 위한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Q2 |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지만, 소방당국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하려는 경우, 지자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해당 소방당국에 제공해도 될까요?

답변: 불가능함. 재난이나 재해에 예방·대비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급박성,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정례 | 안양시 교통·방범 영상정보의 경찰서·소방서·군부대 제공에 관한 건

재난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확인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교통사고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양시는 위 목적으로 재난 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영상정보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각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방범영상정보를 소방서에 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5-10-17호

2 감염병 등 대응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

가. 수집·이용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2.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 유형, 소득분위 정보 등,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 기록, 6.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의 정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2항)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도 포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나. 제공

- **질병관리청장은**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제3항)

*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함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및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4항)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다. 질병관리청장 등의 보호조치 의무

- 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건의료기관 등은**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3항)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을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4항)

* 다른 기관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감염병 대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감염병 대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감염병 대응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참고 |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FAQ

Q1

개인사업자인데,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답변: 가능함.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 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Q2

감염병 전파 차단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방문기록 등의 정보를 감염병 사태 종료 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답변: 불가능함. 감염병 사태 종료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 가능

결정례

소방청의 119 구급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119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의료기관명, **감염병명, 감염병의 주요증상**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질병관리본부로부터는 제공받을 수 없다.** (중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소방청은 본 건 대상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주요증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0조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 등을 위한 감염병, 만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청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구급대원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3-044호

참고 | 감염병이란? (감염병예방법 제2조)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 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중후군 파. 중증 급성호흡기중후군(SARS)하.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 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 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쓰쯔가무시증 카. 렘프토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인플루엔자 나. 식제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침구균달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 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여.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2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확산 방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

가. 수집·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유료도로 관리권자에게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소유주(관리인 포함)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1항·제2항)

나.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3항)
 -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됨

다. 보호조치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은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
 - 정보주체에게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사실, 3.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제5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가축전염병 예방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가축전염병 예방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참고 |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리프트게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참고 | FAQ

Q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제3종 가축전염병), 돼지일본뇌염(제2종 가축전염병)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의 개인차량 통행정보를 유료도로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주 및 관리인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급박한 생명·신체 위협 대응

3-1 실종아동·정신장애인·치매환자 등 발견 · 실종아동법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 약취·유인 등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가. 수집·이용

-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실종아동법 제9조 제2항·제3항)**
 - * 1.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 **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i)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ii)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실종아동등의 동의를 없음으로 경찰관서의 요청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실종아동법 제18조제1의3호)

나. 보호조치 의무

-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실종아동법 제9조제4항)

■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실종아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경찰관서의 장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실종아동등의 발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참고 | FAQ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FAQ

Q1 | 경찰관서의 장이 가출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 로그기록,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될까요?

답변: 가능함. 경찰관서의 장은 가출 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아동법」 제9조에 따라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위치추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오히려,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 성인인 가족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CCTV 영상 등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변: 제한적으로 가능함.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종이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불만한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명백히 생명·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제3호에 따라 CCTV 영상 제공 등의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장애가 없는 성인은 실종아동법 적용대상이 아님

Q3 | 아동의 납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동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납치 용의자의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한적으로 가능함. 「실종아동법」은 범죄와 관련된 용의자의 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록 1]의 4. 통신사실 확인자료 참고).

결정례 경찰청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수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으나, 가출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중략)

경찰청은 실종자의 수색·수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에 실종자 외 동행자가 포함되어 보호자가 해당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동행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02-015호

3-2 자살위험자 보호 · 자살예방법

자살위험자 중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 수집·이용

■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협조해야 함**(자살예방법 제19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

나. 보호조치 의무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은** 요청사유, 긴급구조 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3항)

②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즉시 통보가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5항)

③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6항)

- ④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자살예방법 제19조의3 제7항)
- ⑤ **긴급구조기관**은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자살예방법 제19조의3제8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경찰·소방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제16조)
-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참고 | FAQ

Q

인터넷 카페에 집단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글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황상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도 익명 게시글인 등 다른 방법으로는 동반 자살 모집자와 그 동조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와 동조자의 인적사항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함.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은 자살의사를 표현한 사람과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등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합니다.

3-3 긴급 구조요청 등 대응 · 위치정보법

본인·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적용

*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가. 수집·이용

- ①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이하 ‘긴급구조기관’)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위치정보법 제29조 제1항·제5항)
- ②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제5항)
 - *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나. 보호조치 의무

- ①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위치정보법 제29조제9항)
 - * 요청자, 요청 일시 및 목적,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 ②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위치정보법 제29조제6항)
- ③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위치정보법 제29조제8항)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긴급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긴급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긴급구조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긴급구조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참고 | 긴급한 상황인데도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 예를 들어, 실종아동법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기는 등 생명, 신체의 위험이 우려되어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인의 구조에 필요한 CCTV 영상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조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
 - ※ 누구든지 외부의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함 (119법 제4조제3항)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결정례 | 교통정보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심의요청 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을 추가한 후 동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경찰청의 수배차량자동검색시스템에 연계하여 모든 차량의 영상을 경찰청에 상시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게 되어 사생활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최소처리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영상을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4-19-21호

4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 대응

4-1 보이сп싱 등 피해방지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등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함(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嚇)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함

■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

-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항, 제4조(지급정지) 제2항,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제2항,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익제기) 제2항,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3항, 제9조(채권의 소멸) 제2항,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제3항 및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2항·제3항, 제16조(벌칙)에 따라 필요한 자료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서로 공유해야 함(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

*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 ** 1.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 2.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회사(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함.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음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업무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보호법 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4-2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 긴급복지지원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제2항)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급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 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 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긴급복지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긴급복지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긴급복지지원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보호법 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보호법 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보호법 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

결정례 공주시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나목),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라목)을 명시하고 있다.

(중략)

예방접종이 발병빈도가 높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안내와 상담 업무도 보건소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시 보건소는 관할지역 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시행을 안내하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중략)

△△시 보건소가 대상포진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 보건소는 △△시로부터 본 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16-258호

부록 1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1. CCTV 등의 영상 :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재 확인에 필요한 영상 등 개인정보는 경찰에 제공 가능(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 납치·감금 등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음

2. 통신자료 :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납치·감금한 자 등의 수사를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전기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따라 정보제공요청서에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요청기관의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참고 |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4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3. **신용정보**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6호)

참고 |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6호)

4. **통신사실 확인자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 다만, 수사를 위해 실시간추적자료 및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내란의 죄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요청 가능

참고 |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5항)
-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6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2개월(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제2항)

5.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위치정보법 제29조제5항), 제공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함(위치정보법 제29조제6항)

*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실종아동법 제2조제3호)

부록 2

긴급구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I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수칙

1.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처리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3조)
 - *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개인정보를 취급 등
 - ※ 긴급구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제16조)
- 긴급구조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제18조)

2.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 긴급구조 활동 종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제21조)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제23조·제24조)
 -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민종 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따라 처리**(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처리 불가) (제24조의2)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정보주체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제20조)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조치 관련 규정도 별도로 준수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종료 후 파기 및 질병관리청장 통보 의무
- 실종아동법에 따른 보호자로부터 동의받을 의무
- 자살예방법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의무 등

부록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I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다. 삭제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 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의4(벌칙) 제7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74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긴급구조기관
3. 긴급구조지원기관
4.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⑥ 법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4.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6.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7.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⑦ 법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 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개정 2024. 6. 26.>

정보 제공 요청서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정보 요청 대상 | ·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 요청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요청 정보 종류 | ·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위치정보 등 |
| 요청 사유 | · 예시) OO지역 OO 화재 피해자(또는 피해 우려자) |
| 정보 제공 방법 | · 전자우편, 팩스, 전화, 위치정보시스템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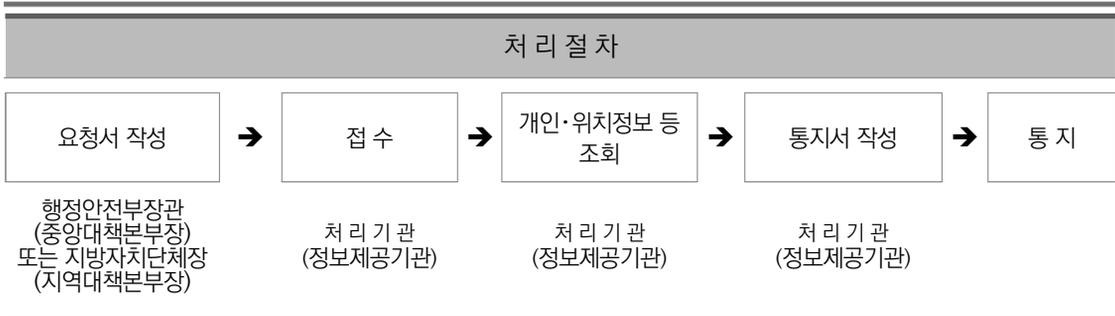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지역대책본부장)



년 월 일

(정보 제공 기관의 장 또는 개인) 귀하



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 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5.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6.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

시스템

-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

5.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및 사업장 정보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및 소득분위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요양기관 정보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 ③ 법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 (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실적
 - 2.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 3.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실적
 - 4. 법 제7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실적
 - 5.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한 경우 그 실적
- ②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6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I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팅병, 리프트게곡열, 렘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깃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

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雞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환(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52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I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I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일시
-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방법, 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의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I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및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3. 실종장소, 실종경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이하 이 항에서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위치정보 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⑤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개인위치정보등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인쇄물·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파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4조의5(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해야 한다.
- ③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인쇄물·서면 또는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보호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I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절차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본인확인기관등”이라 한다)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이하 “인터넷주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를 본인확인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개인위치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청 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대장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터넷주소 요청 대장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장

⑤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파기 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개인위치정보 파기 대장
2. 인터넷주소: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터넷주소 파기 대장
3. 통신사실확인자료: 별지 제8호의6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파기 대장

제8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4조의5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말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대장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보관해야 한다.

④ 영 제4조의5제4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사실 통지서를 말한다.

제8조의3(기록·보관 중인 대장의 점검 등) 경찰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기록·보관 중인 대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

| 요청자 | 주무과장 (상황실장) | 요청 담당자 |
|-----|----------------|--------|
| | | |

년 월 일 시 분

| | | |
|--------------------|------------|------|
| 정보주체 (실종아동등)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 휴대전화번호 | |
| 신고자(보호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 |
|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사유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위치정보사업자

귀하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8. 4. 25.>

인터넷주소 제공 요청서

| | | | |
|--------------------|------------|--------|----------------|
| | | 요청자 | 주무과장 (상황실장) |
| | | | |
| 정보주체 (실종아동등) 정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 |
| 신고자(보호자) 정보 | 성 명 | 생년월일 | |
| |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 | |
| 요청 사유 | | | |
| 요청 자료 | 기간 | | |
| | 내용 | | |
| 비 고 |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관련 사업자

귀하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18. 4. 2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 | | |
|--------------------|------------|----------------|
| | 요청자 | 주무과장 (상황실장) |
| | | |
| 정보주체 (실종아동등) 정보 | 성 명 | 생년월일(개인식별정보) |
| | 휴대전화번호 | |
| 신고자(보호자) 정보 | 성 명 | 생년월일 |
| |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 |
| 요청 사유 | | |
| 요청 자료 | 기간 | |
| | 내용 | |
| 비 고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종아동등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관련 사업자 귀하

I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3.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I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9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I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 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적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로 한정한다.

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 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경찰관서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단서로 한정한다)
-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3항에 따른 의사확인,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
-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
 1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I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I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119항공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I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경우로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2.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 단체의 구성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⑤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⑥ 수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⑥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⑧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의4(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① 수사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 3.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4.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8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I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상)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방법·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상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상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I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소재지, 범치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② 동일한 범죄의 수사 또는 동일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1건의 허가청구서에 의할 수 있다.

③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그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 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서 표지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38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그 제공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시내전화 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I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제1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I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다 자 인 호정씨앤피(☎02-2277-4718)



※ 최신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rivacy.go.kr)”,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관계부처 합동